

## 22 특별재판국 보고

제103회기 특별재판국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국 장 김학목  
서 기 최성은

### 1. 조직

- 국 장 : 김학목    • 서 기 : 최성은    • 회 계 : 서병호
- 국 원 : 박정수 임도영 김대규 김종환 신덕수 이종석 김정호 이기봉 라상기 최병철 이정철 박수갑

### 2. 회의

#### 1) 전체회의

#####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1. 23(금) 10:5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국 장 : 김학목 목사    서 기 : 최성은 목사    회 계 : 서병호 장로

② 절차상 하자로 재판국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3. 4(월)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권징조례 136조에 근거하여 성수가 되지 않아 폐회하기로 하다.

#####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3. 18(월)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권징조례 136조에 의거 성수미달로 개최하지 못하고 5월 9일 오전 11시에 속회하기로 하고 마치다.

#####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9. 5. 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참석자 이름에 총회장과 총회서기 이름은 삭제하여 받기로 하다.
- ② 특별재판국원 보선은 이상돈 목사 代 이정철 목사, 정진석 장로 代 박수갑 장로를 받기로 하다.
- ③ 동대전제일노회의 “재판국 4인 고소 취하 건” 유인물을 일괄 받기로 하다.
- ④ 특별재판국을 종결하기로 하다.
- ⑤ 판결문안 및 보고서 작성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2) 임원회의

### (1) 제1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1. 23(금) 11:4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동대전제일노회의 ‘재판국 4인 고소 취하’의 건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총회임원회로 환부하기로 하다.

### (2) 제2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3. 4(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정진석 장로와 이상돈 목사의 사임 건은 총회임원회로 넘겨 재판국원 보선 요청키로 하다.
- ② 동대전제일노회의 재판국 4인 고소 취하의 건은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하다.

## 특별재판국 최종 보고

### 1. 제103회 총회 수입사항

- 동대전제일노회장 최양언씨가 현의한 특별재판국 구성 현의의 건은 특별재판국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2. 최종 결론

- 첨부와 같이 판결문을 제104회 총회에 보고.

## 첨 부

## 결 정 문(판결문)

사건 : 동대전제일노회 노회장 최양언 씨의 고소의 건

## 1. 고소인

- 1-1. 성 명 : 최양언  
성 직 : 목사  
소속치리회 : 동대전제일노회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33(용운동) 혜성빌딩 4층

## 2. 피고소인

- 2-1. 성 명 : 허은  
성 직 : 목사  
소속치리회 : 동부산노회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계천로 146번길 41(연산동 1259-20)
- 2-2. 성 명 : 김영범  
성 직 : 목사  
소속치리회 : 함북노회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내발산동 666-3)
- 2-3. 성 명 : 김철중  
성 직 : 목사  
소속치리회 : 함동노회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0길 58(암사동 472-20)
- 2-4. 성 명 : 윤익세  
성 직 : 목사  
소속치리회 : 충남노회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은천대로 842번길 6(읍내리 485)

## 주 문

1. 본 사건을 기각한다.



2.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총회가 채용하면 이후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유

1. 제103회 총회에 현의되어 특별재판국이 구성되었으나 사건 심리를 위한 제1차 회의를 가지기도 전에 고소인의 소취하 요청이 있었다.
2. 권징조례 제2장 제7조에 따라 소송하는 원고가 상실되었으니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3. 또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1항과 2항을 보아도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안에 대한 중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이에 총회 특별재판국은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7, 10, 135, 141, 143조에 의거 본 특별재판국 전원 일치의 의결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판결)한다.



후 2019년 5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특별재판



특별재판국장 김 학 목



특별재판국 서기 최 성 은



국 원 서 병 호



국 원 박 정 수



국 원 임도영



국 원 김대규



국 원 김종환



국 원 신덕수



국 원 이종석



원 김정호



국 원 이기봉



국 원 라상기



국 원 최병철



국 원 이정철



국 원 박수갑

